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일 시 : 2022. 2. 10.(목) 10:00
- 장 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항에 따라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림

예비비 사용 내역 : 총 2건, 6,975백만원

① **물재생시설과(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사용 금액 : 1건,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집행 잔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용 일자	비고
	관	항	세항	목	세목			증	감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대부료	사업비용 (700)	영업비용 (710)	처리장비 (716)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450	0.5	476		926	'21.12.3	전용 276, 예비비 200
구로구 향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사업비용 (700)	영업비용 (710)	처리장비 (716)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간 부담금 (05)	1,200	278		△276	924	'21.12.3	전용
예비비	사업비용 (700)	예비비 (800)	예비비 (801)	예비비 (801)	예비비 (00)	402	402		△200	202	'21.12.3	예비비

○ **예비비 사용 사유**

- '21년도 당초 대부료 예산 450,000천원은 '20년도에 납부유예된 대부료 지출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546천원임

※ 그간 국유지 대부료는 납부유예를 통해 차년도 예산으로 납부함에 따라 '20.12월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를 2개월 유예하여 '21.1월에 납부

- '21.12월 납부대상 대부료 476,933천원을 2개월 유예하여 '22.1월 납부코자 '2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년부터는 대부료를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 '21년도 대부료를 기한('21.12.9)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납부

※ '21년도만 예산전용 및 예비비를 지출하여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22년부터는 예산이 既 편성(540,000천원)되어 있으므로 대부기간 시작 전 정상납부 가능

② 하천관리과(일반회계)

○ 사용 금액 : 1건, 6,7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용 일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 비 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01)	67,270		△6,775	60,494	'21.12.20.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 복원 및 정비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등 (305)	배상금등 (01)	-	6,775		6,775	

○ 예비비 사용 사유

- '21.12.20. '서울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무상귀속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1심)하여 항소하였고,
- 소송 최종 결과까지 판결금에 대한 연 12% 이자 발생 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비로 판결금(가집행금) 6,775백만원을 우선 지급함

〈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부당이득금 청구소송 〉

- 당사자 :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피고- 서울특별시
- 소송내용
 - 원고는 2015. 6. 5.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서동 501-6번지 외 16필지에 대하여 지목과는 별개로 현실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상귀속 부분을 협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 2010.4.27. 지구계획승인 당시 지목이 하천, 구거, 도로였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대상이었음을 주장하며 2020.12.9. 소를 제기함.
- 소송결과(1심판결)- 무상귀속이 인정되어 서울시 패소
 -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당시 지목이 "하천, 구거,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들로서,
 - 당시 현황에 따라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 또는 공유의 공공재산임이 인정되며, 이후 공용폐지를 한 바 없는 '중대의 공공시설'에 해당함.